

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(제9조 관련)

1. 평가대행자 등록요건

- 가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
- 나. 교통에 관한 연구·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
- 다. 가목 및 나목의 자 중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고, 제3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

2. 일반기준

- 가.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.
- 나.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평가대행자 외에 다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.

3. 기술인력의 분야별 필요인원 및 자격인정 범위

분야별 필요인원		자격인정 범위	
		기술자격자	학력·경력자
교통 수요	1명 이상	교통기술사	1) 교통학·교통경제학·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) 교통학·교통경제학·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·교통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)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관련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·교통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비용 산정	1명 이상	도로 및 공항기술사, 철도기술사, 항만 및 해안기술사, 도시계획기술사	1) 교통학·교통계획·교통공학·도시공학·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) 교통학·교통계획·교통공학·도시공학·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설계·계획·시공 또는 적산(積算)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			3)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설계·계획·시공 또는 적산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재무 분석	1명 이상	공인회계사	1) 경영학·경제학 또는 회계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) 경영학·경제학·회계학·교통학·교통공학·도시공학·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)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
비고

1.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·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.
2. "종사한 경력"은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.